

# 가족 증제 서비스



확복한 가정 유지하기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 Health Services

**Children's Administration**



## 청소년법의 취지

1977년에 제정된 청소년법(13.32A항 RCW)에 주의회는 "가정은 미국인의 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다. 가정 안에 명백한 반증이 없이 가정은 양성되고 완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1990년에 주의회는 본 법안에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 법률을 추가하였고, 1995년에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법률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제정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둔 부모를 지원한다.
- 부모나 청소년이 가정 내 심각한 데립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그들에게 법정의 절차를 제공한다.
- 청소년이나 가족들을 도와 치료, 후원 및 기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중재서비스(FRS - Family Reconciliation Services)

워싱턴 주정부는 보건사회부(DSHS), 아동관리국(CA),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DCFS) 등을 통해 가족평화서비스(FRS)를 제공합니다. FRS는 가출아동이나 적당한 가정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아동, 부모와 자녀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도와 드립니다.

FRS는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 부모와 자녀, 가출 아동을 둔 부모, 가출아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DCFS는 13 ~ 17세의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RS는 부모와 자녀간의 화해, 가족 재결합 및 가족간의 관계를 강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비스는 수용/평가, 위기 카운슬링 및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청소년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부모와 청소년은 거주 지역의 DCFS 사무실에서 FR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그 지역에 있는 DCFS 사무실에 연락하여 해당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CFS 사무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 워싱턴 주정부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그 가족이 먼저 전화로 대화를 한 다음 사회복지사와 만날 약속을 정합니다. 사회복지사, 청소년과 그의 가족은 가정 내에 있었던 일들과 이들 문제를 어떻게 서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의 가족을 위기 카운슬링이나 기타 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FR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의도는 해당 가족들을 재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강요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동관리국(CA)의 직원들과 전속 카운슬러들을 통해 상담이나 기타 서비스들을 주 7일, 24시간 내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당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간에 서로 화해를 하지 못했을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동안 청소년을 잠시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수용할 경우 해당 청소년의 부모는 청소년보호관찰에 드는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담할 청소년 보호관찰 비용은 아동양육비담당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경찰의 청소년 보호관찰

경찰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청소년을 보호관찰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갔다고 신고 받았을 경우
2. 청소년의 나이 그리고 현재 청소년이 있는 위치나 시간대가 청소년에게 위험하다고 경찰관이 무리 없이 믿는 경우
3. 청소년이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을 가출하였거나 청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에서 청소년 가출을 신고해 왔을 경우
4. 소년법원에서 소년법원배치명령서를 위반한 청소년에 관해 신고를 해 왔거나 소년법원에서 청소년에 대해 체포령을 발부했을 경우

경찰관은 구류한 청소년을 부모의 집이나 직장으로 데려가서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가족에게 말해 줍니다.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SCRC (요보호 청소년 수용 센터 - Secure Crisis Residential Center)가 있으면 그 곳에 청소년을 수용합니다. SCRC가 지역에 없을 경우 청소년 배치를 위해 직원이 보호관찰하는 CRC 나 DCFS에 일단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믿을 만한 친척집이나 다른 성인에게 혹은 인가 청소년쉼터에 청소년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청소년을 CRC 나 SCRC로 배치할 때 DCFS에 통지를 하거나 CRC 나 SCRC 직원이 DCFS로 청소년 배치에 관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CRC 나 SCRC 직원은 가족들과 같이 FRS에 관해 의논하게 됩니다.



## 청소년 및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지원

### CRC(오보호 청소년보호센터 - Crisis Residential Center) 배치

청소년이 CRC나 기타 인가 시설에 배치할 때 당국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청소년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을 수용(감금)할 수 있는 CRC가 있으면 청소년을 최소한 24시간 유치해야만 합니다. 24시간 이후 청소년에게 도주 가능성이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직원이 보호관찰하는 CRC 나 DCFS에 옮겨 수용하게 됩니다. 청소년은 감금 혹은 직원이 보호관찰하는 CRC 나 DCFS에 5일간까지 수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가족은 청소년이 CRC 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재결합을 위해 가족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여 청소년이 5일이내로 가정에 복귀할 수 없으면 CRC 나 FRS 직원은 청소년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기타 방법 등을 논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잠시 친구집이나 친척집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 DCFS와 결정해 일시적으로 위탁 가정에 맡기는 방법,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 혹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DCFS는 가족과 청소년을 위해 기타 이용 가능한 가정과 커뮤니티의 자원을 모두 다 시도해 보았고 DCFS에서 더 이상 실행가능한 옵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청소년을 위탁 가정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커뮤니티 복합 훈련팀

부모나 청소년은 문제 해결에 카운슬링과 기타 서비스에 관여하는 '커뮤니티 복합 훈련팀'을 요청(지역 내 있을 경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훈련팀은 부모와 청소년 양쪽을 위해 지원조직체로 행동합니다. 청소년과 그 가족은 자기들이 아는 사람 즉, 목사, 코치, 교사, 친구 혹은 친척에게 본 훈련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진술서

워싱턴 주법에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을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ARY)'으로 정의합니다.

- (a) 부/모의 허락 없이 최소한 연 72시간 이상 집을 가출한 소년소녀
- (b) 청소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위험을 가져다 주는 행동 등,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소녀
- (c) 마약과 관련하여 형사입건된 문제는 없으나 마약남용 문제가 있는 소년소녀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진술서는 청소년 보호자인 부모가 청소년을 가정이나 적정 환경에 배치시켜 청소년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학교 등교, 가정규칙 준수 혹은 카운슬링 참석 등을 하도록 소년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청소년은 법정모욕죄로 7일까지 구속되거나 감금시설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ARY를 신청하는 부모는 해당 청소년의 법적 보호자 상태를 유지합니다. FRS 평가나 카운슬링은 무료로 제공되나 그 외의 서비스는 부모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ARY 진술서를 제기하기 전에 지역의 DCFS 사무소에 가족 평가서를 먼저 작성해야만 합니다.

##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CHINS)'

카운슬링을 받고 친척집에 임시 거주하고 혹은 이와 유사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청소년과 그 부모가 가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청소년 자신이나 그 부모가 청소년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게 하길 원할 경우 청소년이나 그 부모는 CHINS 진술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주법에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을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CHINS)'으로 정의합니다.

- (a) 청소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위험을 가져다 주는 행동 등,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소녀
- (b) 허락없이 연 24시간동안 부모의 집이나 CRC, 가정 밖의 배치 장소 혹은 법원 명령 하에 배치된 장소를 2번 이상 가출한 청소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소년소녀
  - (i) 심각한 마약남용문제가 있다는 것이 역력히 있는 경우
  - (ii) 청소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위험을 가져다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 (c) (i) 의식주, 건강보호, 교육 혹은 가족 유지나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
- (ii) 이들 서비스의 이용부족 혹은 서비스 활용을 거부 당하였을 경우
- (iii) 청소년 부모가 지속적으로 가족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결실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혹은 가족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해당 정의에 개요된 청소년이 있을 경우 CHINS 진술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DCFS 사회복지사는 해당 청소년에게 상기에 정의한 상태가 현존하고 특히 청소년 부모가 자녀가 집에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년이 살 다른 곳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CHINS 진술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진술서를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고 합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이 이젠 없고, 청소년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청소년과 그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부모나 해당 아동은 본 CHINS 진술서를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지역의 DCFS 사무소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족 평가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법원에서 청소년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도록 허용할 경우 청소년은 대개 친척집이나 인가된 위탁가정에 배치됩니다. 해당 부서는 청소년이 인가된 위탁가정이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친척집에 배치되는 경우에만 해당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감독하게 됩니다. 해당 법원이 청소년을 연고가 없는 다른 집이나 인가 받지 않은 가정을 선택해 배치시킬 경우 DCFS는 해당 케이스를 종료한 후 법원에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DCF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의 부모나 DCFS는 CHINS 법원의 소송 절차에 대해 해지 통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청소년이 법원에서 배치한 장소를 연 30일 이상 가출한 경우
- (b) 부모나 청소년 혹은 양쪽 모두가 가족 재결합을 위한 실행가능하고 적합한 조치들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 (c) 해당 부서에서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유용하고 적합한 자원을 모두 다 이용하였을 경우

법원은 90일 이내 가족 재결합에 대한 진전을 확인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해 재검합니다. 심의회를 개최하는 동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은 해당 배치장소에 6개월까지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9개월 후에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카운슬링이나 기타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이 가능한 한 가정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CHINS 명령서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청소년에게 범정부범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벌금형이나 7일간까지 청소년을 감금해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법원의 명령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정부범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FRS, ARY, 혹은 CHINS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번호부 워싱턴 정부(Washington State)란의 보건사회부 산하기관인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서(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ivision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하에 기재된 가족 평화 서비스(Family Reconciliation Services)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 **커뮤니티 리소스**

### **치료**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청소년 및/혹은 부모가 그 지역의 정신건강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남용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알코올/마약 헬프라인의 무료전화, 1-800-562-1240 (워싱턴주만 가능)로 전화하십시오.

### **학교출석에 관한 정보**

DSHS는 학생의 무단결석에 관련되는 문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교육구나 카운티 소년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워싱턴 주법은 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 되는 모든 아동은 공립, 사립, 홈스쿨을 다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교직원이 해당 학생의 결석 이유에 동의할 경우 일시적으로 결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으로서 다음에 해당될 경우 학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 (a) 청소년의 부모가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혹은 청소년이 법적으로 부모로부터 해방된 경우
- (b) 청소년이 수입이 있는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을 경우
- (c) 청소년이 해당 학교의 졸업요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
- (d) GED를 취득하였을 경우

### 무단결석에 대한 결과

학교당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 한 달에 무단결석을 한 번할 경우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한 달에 무단결석을 두 번할 경우 학부모, 학생과 함께 면담한다.
- 결석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을 도울 조치(예: 학교프로그램 조절, 학생을 돕기 위한 개별적 지원을 취한다).
- 한 달에 일곱 번 혹은 일년에 열 번의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무단결석 진술서를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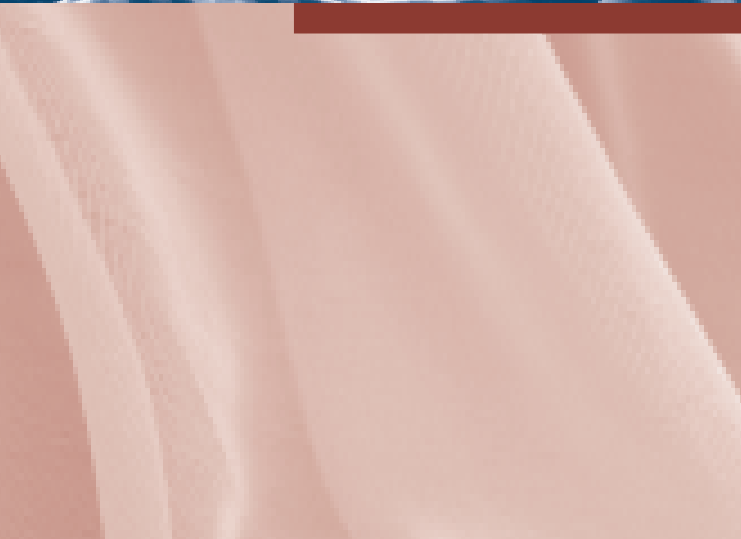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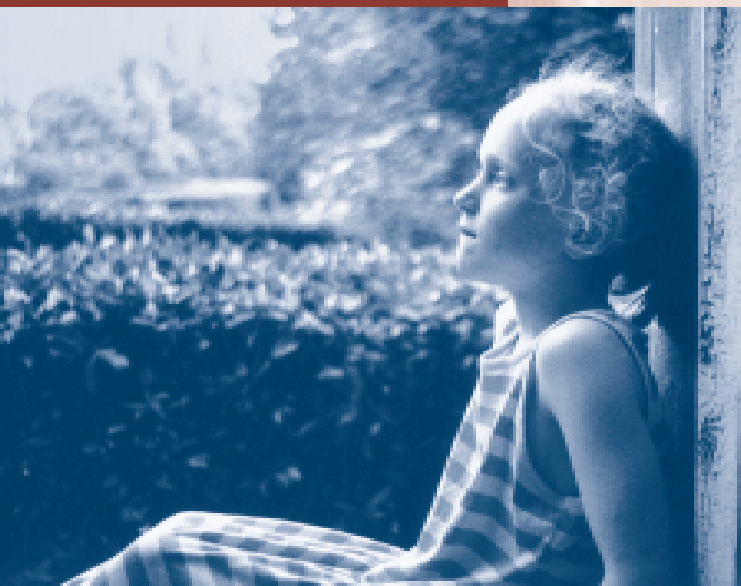


##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를 발행하여 제공하고 심의회를 개최한다.
- 학부모에게 학생이 결석한 각 일자만큼 벌금을 내게 하거나 학생의 학교에서 지역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한다.
- 학교 출석을 마다한 학생에게 법정모욕죄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학생을 7일까지 구치소에 격리감금 혹은 벌금, 지역봉사활동을 명하거나 해당 사례를 지역의 무단결석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 **경찰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석을 하는 청소년을 보호관찰하여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을 학교나 학부모 혹은 교육구의 무단 결석 프로그램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Children's Administration**